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3049
----------	------

2022. 02. 11.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석전문위원

1. 제안경위

- 2022. 1. 21. 노식래 의원 발의 (2022. 1. 25. 회부)

2. 제안이유

- 대학가 청년들은 거주기간이 짧고 학업과 취업활동에 바빠 지역사회에 관심이 없다는 편견이 있음.
- 현행 조례 또한 청년의 창업활동에 수반되는 주거지원을 통해 청년의 자립기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장기거주하며 지역사회 공동체 참여를 원하는 청년이 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가 청년의 창업 뿐 아니라 학업, 취업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자립 뿐 아니라 지역사회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을 청년의 창업활동에서 학업, 취업, 창업활동으로, 주택공

급을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로, 자립기반 강화를 자립기반 강화와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로 각각 확대함(안 제1조).

나. 청년을 주거서비스의 소비주체이자 지역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정의하고 자립·정착 기반 마련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2조).

다. 기본원칙에 청년이 지역사회 공동체의 주체적인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4조).

4. 검토의견

- 「주거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층 등 주거지원필요계층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기본원칙에 맞는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할 책무가 있으며¹⁾, 「청년기본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주거지원 등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 이 개정조례안은 청년의 활동범위에 학업, 취업이라는 현상을 포함시키고 이에 수반되는 주거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시장이 ‘청년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청년이 지역사회에 정착해 공동체의 주체적인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이를 지원토록 하기 위한 것임.
- 이를 위해 청년을 주택시장에서의 단순한 소비주체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1) 「주거기본법」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소득수준·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3. ~ 9. (생략)

2) 「청년기본법」 제20조(청년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이들의 자립과 지역사회 내 정착을 도울 수 있도록 조례의 목적규정과 기본이념상 청년의 정의를 개정하여, 궁극적으로는 청년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청년의 지역사회 참여 지원’을 포함 시킴으로써 정책적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기본 조례의 성격 상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관련정책의 수립·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시장의 책무에 총괄적이고 다소 추상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 개정 후 ‘청년의 자립기반 강화’라는 조례 입법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입법효과에 대한 사후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시 청년 관련 조례〉

제정일자	자치법규명	소관부서	비고
2012. 03. 15.	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자리정책과	
2012. 12. 31.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주택정책과	(주거 관련)
2013. 10. 04.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자리정책과	
2015. 01. 02.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미래청년기획단	
2016. 07. 14.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주택공급과	~'22.12.31.만료
2018. 03. 22.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주택정책과	
2018. 03. 22.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미래청년기획단	
2018. 10. 04.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창업정책과	
2020. 10. 05.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미래청년기획단	
2021. 03. 25.	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문화예술과	
2021. 12. 30.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미래청년기획단	

담당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입법조사관 최지현
연락처	02-2180-8216
이메일	cjh1786@seoul.go.kr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제13조(청년의 주거안정 등)

-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임차보증금 및 차임의 보조 방안 등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1항, 제2항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청년 1인가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을 포함한 청년의 시정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겪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 ① 청년은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사회문제의 해결에 능동적이며 자율적으로 참여한다.
- ② 청년의 시정참여 활성화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 1.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도적인 문제해결에 기반을 하여 운영한다.
 - 2. 청년의 권익증진, 사회적 불평등 해소 및 시정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한다.
 - 3. 청년참여 활동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문제 해결로 이어지도록 한다.
 - 4. 청년참여 활동은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며 합의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 5. 현재의 문제를 넘어 다가올 미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다.
- 2. “청년참여“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이 예산과 정책을 제안하고 위원회에 참여하는

등의 시정참여 방식을 말한다.

3. “청년참여기구“란 정책의 수립과 시행, 평가 등 정책과정에서 청년의 의견수렴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청년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를 말한다.
4. “청년자율예산“이란 청년참여기구에서 제출한 예산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청년참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청년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참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정책형성단계에서부터 청년 등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자율예산의 범위) 예산편성과정에 청년의견 제출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전체 예산과 기금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청년참여 활성화) 시장은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 홍보, 인력양성
2. 정책 및 사례 연구 조사
3. 청년 생태계 구축 및 지원
4. 청년의 민·관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청년참여기구의 운영)

- ① 시장은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해 청년참여기구를 운영한다.
- ② 청년참여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 및 분과를 운영할 수 있다.
- ③ 청년참여기구는 청년단체, 이해당사자, 청년 전문가 및 자치구 청년참여기구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④ 청년참여기구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년참여기구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에 간사를 둔다.
- ⑤ 그 밖에 청년참여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청년참여기구의 기능)

- ① 청년참여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과 시민의 삶 개선을 위한 신규 정책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건의
 2.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 건의
 3. 청년자율예산안 편성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
- ② 청년참여기구는 시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9조(청년참여기구의 구성)

- ① 청년참여기구는 5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청년참여기구의 위원은 공개적인 방법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 ③ 청년참여기구는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④ 청년참여기구의 위원 위촉은 수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으로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정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 ① 위원 임기는 해당년도 위촉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 ① 청년참여기구는 위원장을 둔다. 위원장은 청년참여기구를 대표하고 청년참여기구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선출된 성별 동수의 2인 공동운영위원장을 둔다.

제12조(총회)

- ① 청년참여기구는 총회를 개최하며 그 명칭은 서울청년시민회의(이하 “회의“로 한다)로 한다.
- ② 회의는 정책 개선 및 청년자율예산안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을 정한다.
- ③ 회의는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성립되며, 참여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된다.
- ④ 회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결정과정에 온라인 정책패널 및 일반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정책패널과 시민이 총회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절차 및 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⑤ 위원이 아닌 자가 총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경우 절차에 따라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야 하며, 그 절차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⑥ 회의에서 의결한 청년자율예산편성안은 예산안과 함께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 ① 운영위원회는 청년참여기구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청년참여기구의 정책 개선 및 청년자율예산안 논의에 관한 사항
 - 2. 청년참여기구 분과 및 기획분과 구성에 관한 사항
 - 3. 회의의 개최에 따른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청년참여기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청년자율예산 심사기준) 청정넷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청년자율예산을 심의하여야 한다.

- 1. 협업과 합의가 촉진될 수 있는 정책의 예산을 우선으로 한다.
- 2. 미래대응에 필요한 실험적 정책의 예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 3. 그 밖의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정책의 예산은 제외한다.

제15조(청년 참여자문회의)

- ① 시장은 본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청년참여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열 수 있다.
- ② 자문회의는 청년 정책 전문가, 청년 단체 활동가, 청년참여기구의 추천자를 포함하여 관련 공무원 등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16조(기능) 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청년참여기구 및 청년자율예산 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자문 및 활동 지원
- 2. 청년참여 및 청년자율예산 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 3. 그 밖에 자문회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의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거권) 서울시민은 누구나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제3조(시장의 책무)

- ① 시장은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주거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지원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주거정책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2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거정책 및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주거종합계획(이하 “주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시장은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주거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내용에 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한 경우
 2. 다른 법률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 ③ 시장은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 및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주거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 전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연도별 주거종합계획)

- ① 시장은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은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해당 연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해당 연도 3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서울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주거실태조사) 시장은 법 제20조 및 「주거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내용,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주거복지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복지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임차보증금과 임대료의 보조 및 대출
2. 공공임대주택 입주민과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기금 지원사업
3.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저소득시민집수리 지원사업
4. 주거약자 등 주민 공동체 증진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자활지원사업
5.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하여 거주하기 곤란하게 된 긴급구조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6.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택개조자금 지원
7.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주택으로의 개조 자금 지원
8. 주거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사업
9.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10. 고시원 및 쪽방 거주자를 위한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사업
1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따라 재해 또는 질병, 경제적 사유 등 시장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공급
12.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제24조 (생략)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중심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24조 (생략)

부칙 <제7096호, 2019.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기간)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 결정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대해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8103호, 2021.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